

특례 재입학에 관한규정(3-5-3)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통령령 제13875호('93.4.2), 학부 81210-958('93.7.8)에 의거 제적생 정원의 재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재입학대상) 1991년 3월 2일부터 1993년 7월 20일 사이에 제적된 자 중 사실상 학생활동 및 경제적 사유, 신체적 사유, 군입대에 의한 학적관리 미 이행으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3조(신청절차) 제2조의 대상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재입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관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조(복적심사위원회) ① 재입학신청자의 재입학 심사대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.(개정 '04. 8. 11)
② 복적심사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 조교수 이상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.
- 제5조(재입학 허가) ① 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재학당시의 성적, 품행, 출결사항,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(개정 '04. 8. 11)
② 재입학 심의를 위한 복적심사위원회의는 위원 2/3 이상으로 심의한다.('04. 8. 11)
- 제6조(재입학절차) 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 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64조 및 제66조의 수료학점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학년, 학기에 재입학 할 수 있다.
- 제7조(재입학시기) 재입학의 시기는 본 대학교 학칙 중 부칙 제3항에 정한 시기로 하고, 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1일부터 부터 시행한다.